
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호 의원 외 6인

2. 찬 성 자 : 김근한 의원 외 6인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12조)
-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23조)
- 공공위탁·민간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(안 제24조~제27조)
- 공공위탁·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32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, 제49조, 제76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는 그동안 공공기관으로의 사무 위탁·대행에 관하여 별도의 의회 동의, 지도·감독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었음.
- 본 조례안은 기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와 함께,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
- 집행기관에서는 사무의 위탁 적정성 여부, 의회 동의 대상 사무,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, 수탁기관 선정 기준, 수탁기관 지도·감독 및 감사 등 사무위탁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여 위탁사무의 절차적 정당성을 빠짐없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위탁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행정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따른 사무위탁 지침 등을 조속히 배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임.